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288호

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

행정 예고

2022. 6. 29.

식품의약품안전처

##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288호

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「위생용품의 표시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9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#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신체치수에 따라 구분이 필요 없는 일자형 성인용 기저귀의 허리둘레길이 표시 의무를 삭제하고, 연구·조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한 한글표시사항 의무를 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, 세척제와 헹굼보조제의 제품 특성에 따라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표시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## 가. 연구·조사용 수입 위생용품 한글표시 생략(안 Ⅱ.1.타.)

연구·조사용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한글표시 생략 규정 신설

## 나.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척제, 헹굼보조제의 사용기준 및 사용 방법 표시 개선(안 Ⅲ.1.자., Ⅲ.1.차. 및 Ⅲ.2.자.)

- 1) 세척제 사용 후 물헹굼 의무를 제품 특성에 따라 예외를 두도록 단서  
신설
- 2)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제품 특성상 별도 희석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 
표준사용농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, 표준사용농도 표시  
의무를 제외토록 단서 신설

## 다. 성인용 기저귀 허리둘레길이 표시 규정 정비(안 Ⅲ.17.자.)

성인용 기저귀 중 일자형 기저귀는 허리둘레길이 표시 의무에서 제외  
하고, 팬티형 및 테이프형 기저귀만 표시토록 개선

## 라. 재질명 표시방법 명확화(안 별표 제7호)

재질명 표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할 수 있  
도록 명시

## 3. 의견 제출

「위생용품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 
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

의약품안전처장(우편번호 : 28159, 주소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, 참조 : 위생용품정책과, (전화) 043-719-1734, (팩스) 043-719-173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 사항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○ 일반우편 : 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

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

○ 전자우편 : shine1504@korea.kr

#### 4. 그 밖의 사항

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-000호

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「위생용품의 표시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2년 00월 00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Ⅱ. 1. 타. 3)에 바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) 연구·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

고시 제2021-112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Ⅲ. 1. 자. 3) 중 “한다.”를 “한다.(단, 제품의 특성상 물 행균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해야 함)”으로 하고, Ⅲ. 1. 차. 중 “표시”를 “표시(단, 분사형 제품 등 제품 특성상 별도 희석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고체형 비누, 일체형 세척제 제품 등 표준사용농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 표준사용농도 생략 가능)”로 한다.

Ⅲ. 2. 자. 중 “표시”를 “표시(단, 제품 특성상 별도 희석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표준사용농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 표준사용농도 생략 가능)”로 한다.

Ⅲ. 17. 자. 중 “성인용 기저귀”를 “성인용 기저귀(팬티형, 테이프형)”으로 하고, “위생깔개(매트)”를 “성인용 기저귀(일자형), 위생깔개(매트)”로 한다.

별표 제7호마목 전단 중 “재질명을 표시하는 경우 합성수지제는”을 “재질명 표시는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하고, 재질명을 표시하는 경우 합성수지제는”로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고시 제2021-112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Ⅲ. 1. 자. 3), Ⅲ. 1. 차. 및 Ⅲ. 2. 자.의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적용례)**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에 적용한다. 다만, 이 고시 시행 전에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 또는 위생처리된 위생용품에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.

**제3조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 또는 위생처리된 위생용품은 해당 위생용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·대여하거나 판매·대여의 목적으로 저장·진열·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I. 총칙 (생 략)</p> <p>II. 공통표시기준</p> <p>1. 표시방법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카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타. 다음 각 호의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1) · 2)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3)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60px;">가) ~ 마)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60px;">파. (생 략)</p>	<p>I. 총칙 (현행과 같음)</p> <p>II. 공통표시기준</p> <p>1. 표시방법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카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타.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1) · 2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3)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60px;">가) ~ 마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60px;">바) <u>연구·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60px;">파. (현행과 같음)</p>
<p>III.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고시 제2021-112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</p> <p>1. 세척제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아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자. 사용기준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1) · 2) (생 략)</p>	<p>III.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고시 제2021-112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</p> <p>1. 세척제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자. 사용기준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1) · 2) (현행과 같음)</p>



현 행	개 정 (안)
<p>3) 식품용 기구·용기용, 식품 제조·가공장치용 세척제에 사용한 후에는 음식기,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.</p>	<p>3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한다. <u>(단, 제품의 특성상 물 행 굽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 타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 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해 야 함)</u></p>
<p>4)·5) (생 략) 차. 사용방법 - 제품별 표준사용농도와 사용방법을 <u>표시</u></p>	<p>4)·5) (현행과 같음) 차. 사용방법 - 제품별 표준사용농도와 사용방법을 <u>표시(단, 분 사형 제품 등 제품 특성상 별도 희석 없이 그대로 사 용하거나 고체형 비누, 일 체형 세척제 제품 등 표준 사용농도를 명확하게 정 하기 어려운 경우 표준사 용농도 생략 가능)</u></p>
<p>2. 헝겍보조제 가. ~ 아. (생 략) 자.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</p>	<p>2.헝겍보조제 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</p>

현 행	개 정 (안)
<p>- 제품별 표준사용농도와 사용방법을 <u>표시</u></p> <p>17. 일회용 기저귀</p> <p>가. ~ 아. (생 략)</p> <p>자. 적용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u>성인용 기저귀</u>는 허리둘레길이를 “00 ~ 00 cm” 등의 범위로 표시</li> <li>- (생 략)</li> <li>- 신체치수에 의해 제품을 구분하지 않는 <u>위생깔개(매트)</u> 등 제품의 경우 적용 대상을 “전 성인”, “전 유아 및 어린이용”으로 표시</li> </ul> <p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">(예시) 체중(유아), 허리둘레(성인) 등</p>	<p>- 제품별 표준사용농도와 사용방법을 <u>표시(단, 제품 특성상 별도 희석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표준사용농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 표준사용농도 표시 생략 가능)</u></p> <p>17. 일회용 기저귀</p> <p>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</p> <p>자. 적용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u>성인용 기저귀(팬티형, 테이프형)</u>-----</li> <li>- -----</li> <li>- (현행과 같음)</li> <li>- -----</li> <li>- ----- <u>성인용 기저귀(일자형), 위생깔개(매트)</u> -----</li> <li>- -----</li> <li>- -----</li> </ul> <p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">(예시) 체중(유아), 허리둘레(성인) 등</p>
<p>[별표]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7. 원료명 및 성분명</p>	<p>[별표]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원료명 및 성분명</p>

